

#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3004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9. 26. 김향숙 의원 등 8인  
나. 회 부 일 자: 2025. 10. 2.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10. 20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향숙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고성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,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이용 활성화 및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며, 위탁생산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관련 조항 정비(안 제5조, 제7조, 제8조 ~ 제10조 삭제)
- 2) 농산물가공 관련 교육 이수자의 시설 사용자 범위를 타 기관 교육이수자 까지 확대(안 제11조)
- 3) 위탁생산(OEM) 계약서 및 발주신청서 제출 절차 신설(안 제12조 신설)
- 4)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(안 제18조)
- 5) 건조기 사용료 산정기준을 일 단위에서 회 단위로 변경하고 고가 장비 사용료 신설(안 제14조, 별표 1)

- 6) 출하서약서를 삭제하고 위탁생산계약서 및 발주신청서 서식 신설(별지 제1호 ~ 제5호서식)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49호
  - 예고기간: 2025. 9. 26.(금) ~ 10. 1.(수)[5일간]
 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#### ○ 개정 목적

-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
- 시설 사용자 교육 이수 범위를 타 기관 교육 이수자까지 확대하며,
- 위탁생산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#### ○ 주요 개정내용

-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관련 조항 정비  
(안 제5조, 제7조 일부 개정, 안 제8조 ~ 제10조 삭제)
- 안 제11조(시설의 사용): 시설 사용자를 본 교육 이수자에서 타 기관 교육 이수자까지 확대 인정 개정
- 안 제12조(제품발주): 위탁생산 계약 절차 명확화 조항 신설
- 안 제18조(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)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정
- 효율적 운영, 농가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 미비점 보완 개정(별표 1, 별지 제1호~제5호 서식)

○ 관련 법령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식품위생법」 등

○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와 교육 이수자 인정 범위 확대, 위탁생산 계약 절차 명확화하고,
-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운영의 합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
- 개정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,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0. 2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